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17975
등록일자	2015.8.31.
결재일자	2015.8.31.
공개구분	부분공개(6)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정동환	주영애	대김근태	배경섭	전월 08/31 주영중	
협조자					

-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

2015년 하반기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5. 9. 1. ~ 9. 30. [30일간]
- **점검인원** : 10名
 - ▶ 민간전문가(구조·전기공사기사, 옥외광고사) 3명, 공무원 7명
- **점검대상** : 관내 대형(옥상)광고물 99개소 중 93개소 (대형전광판 5개소 포함)
- **점검방법**
 -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위탁업체(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의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반 편성 및 운영
- **행정사항**
 - ▶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안내문 발송
 - ▶ 점검 완료 후 민간전문가 점검 노임 지급
 - ▶ 점검결과 사후조치 확행

2015. 8.

강 남 구
(도 시 계 획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 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 등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우리구 대형(옥상, 벽면전광)광고물로 인한 재난사고의 사전 방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 수혜범위 : 강남구 전역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O)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용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전문가분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

2015년 하반기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계획

관내 대형(옥상)광고물로 인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구조·건축)와 민·관 합동으로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국민의 인명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II 추진방법

- 점검대상 : 관내 대형(옥상)광고물 99개소 중 93개소 (대형전광판 5개소 포함)
 - 연장신청 등으로 최근 3월(2015. 6월 ~ 8월) 이내에 점검한 광고물 및 2015. 9월 중 표시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 제외
 - ⇒ ㈜아산기획(강남구 도산대로 114 (논현동)) 외 5개소 옥상간판 제외
- 점검기간 : 2015. 9. 1(수) ~ 9. 30(목) [30일간]
- 점검방법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위탁업체(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의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반 편성 및 운영

III 세부 추진 계획

- 점검 대상 : 관내에 허가·설치된 대형광고물 93개소(옥상 88개소, 벽면전광 5개소)

○ 동별 현황

(2015. 8. 28. 현재, 단위 : 개소)

계	구분	논현	신사	삼성	청담	역삼	대치	압구정	도곡
93		28	13	11	14	12 (전광판5개소 포함)	10	3	2

※ 2015년 하반기 대형(옥상, 벽면전광)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목록 참조 [별첨]

□ 점검조 편성

○ 점검반 편성 - 민간전문가(구조·전기공사기사·옥외광고사)3명, 공무원 7명

조편성	담당 공무원	점검 동	건축·구조기술사
총괄	광고물관리팀장(행정6급 주명애)	-	-
1조	정상섭(행정6급), 정동환(행정9급)	역삼, 논현	구조기술사
2조	이만범(행정7급), 김지현(행정8급)	신사, 삼성, 압구정	전기공사기사
3조	안정연(행정8급), 정화성(행정7급)	청담, 도곡, 대치	옥외 광고사

⇒ 우리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업체의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추진일정

- 2015. 9. 1 ~ 9. 9 :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 2015. 9. 10 ~ 9. 30 : 대형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 2015. 10. 1 ~ 10. 30 : 지적사항 보완통보 및 보수 완료
- ※ 상기 일정은 점검 추진 상 변경 가능함.

□ 중점 점검사항

- 2015년 상반기 시정명령 대상광고물 7개소 우선 점검
- 광고물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추락 및 파손 우려 여부
- 전기설비의 노후 및 부실 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우려 여부
- 광고물 등의 노화, 균열, 변형, 휨, 이탈, 부식 여부
- 광고면 페인트 도장상태 등 미관저해 여부
- 기타 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 등

□ 점검절차

- 점검결과 적출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고, 현장정비가 어려울 경우 관리자에게 시정조치 요구

- 위험 정도가 클 경우 안전점검기관에 정밀검사 의뢰
- 보고체계 확립
 - 보고단계 : 1단계 ⇒ 사고인지 후 즉시 비상연락체제 유선보고
2단계 ⇒ 사고현장 확인 후 서면보고
 - 대형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제 확립
 - 점검 및 조치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처리

- 붙임 : 1. 옥외광고물안전점검표
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
3. 안전점검실시 안내문
4. 안전점검 관련 법령
5. 부적정 광고물 조치결과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7,032,230원(금칠백삼만이천이백삼십원)
- 산출내역 : 3명 1조X10개소(1일 작업량)X10일(소요시간) [붙임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
 - 구조기술사 : 340,765원 X 10일 X 1명 = 3,407,650원
 - 중급기술사 : 181,229원 X 10일 X 2명 = 3,624,58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 도시개발, 쾌적한도시환경조성, 안전관리수준향상 및 민원제로화, 대형광고물상시안전점검, 일반운영비

별첨 : 2015년 하반기 대형(옥상, 벽면전광)광고물 안전점검 대상목록. 끝.

Ⅲ 기 대 효 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 노후 불량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광고주 및 광고물 관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Ⅲ 행 정 사 항

-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안내문 발송 (붙임3. 안전점검실시 안내문 참조)
- 점검 완료 후 민간전문가 점검 노임 지급
- 점검결과 사후조치 확행

[붙임 1] 안전 점검표

옥외광고물 점검표

□ 광고물 개요

설치주소 (건물명)	종류	광고주	최초허가일	허가기간	표출방법	표출내용
강남구 로 길 []	옥상 벽면 기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면표출	

□ 항목별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기초부분	▶ 앵커 등 광고물 고정 시설물 상태		
	▶ 기초콘크리트 상태		
	▶ 기 타 ()		
2. 철골부분	▶ 앵글연결부분 용접 또는 볼트 조임 상태		
	▶ 게시시설에 광고물 게시상태		
	▶ 부식상태		
	▶ 기 타 ()		
3. 전기설비	▶ 안전기 등 전기설비 부착 상태		
	▶ 전기배선 등 절연 상태		
	▶ 피뢰침 상태		
	▶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 접지시설 상태		
	▶ 전기사용 자재 규격품 사용여부		
	▶ 기 타 ()		
4. 도색상태	▶ 광고면 페인트 도장상태 (미관저해 여부)		
	▶ 기 타 ()		
5. 기타	▶ 설계서 및 시방서와 일치여부		
	▶ 외관상 구조전문가의 점검 필요하거나 붕괴위험 여부		
	▶ 기 타 ()		

2015. 9 . .

점 검 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붙임 2]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2015-115호(2015.01.27)

201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 술 사	452,202	392,867	340,765
특급기술자	395,965	354,360	249,900
고급기술자	310,036	278,193	208,973
중급기술자	258,353	222,605	181,229
초급기술자	205,559	191,622	140,862
고급숙련기술자	255,438	208,620	163,029
중급숙련기술자	215,141	180,455	141,768
초급숙련기술자	130,673	145,050	123,044

나. 평균근무일수 : 22일

다. 공표일 : 2015년 1월2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국가승인통계 제37201호)]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안내문

수신처 : 대표 귀하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동법시행령 제37조(검사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귀하(사)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사오니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광고물 설치현장 방문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일시 : 2015. 9. 1 ~ 9. 30
 -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구조기술사,전기공사기사)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 문의전화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정동환(☎3423-6127)
- ※ 세부 점검일정 별도 통보 예정

2015년 9월

강 남 구 청 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3. 그 밖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같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